

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 기지급금 회수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1. 1. 15.

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고 양 지 청 장



1. 건 명 : 감원방지의무 미준수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
2. 근 거 :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-공시송달자 명단 참조
4. 공고기간: 2021. 1. 15. ~ 2021. 1. 29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고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강종규주무관(전화 031-920-395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감원방지 미준수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 관련 공시송달 명단

(공고기간 : 2021. 1. 15. ~ 2021. 1. 29.)

연번	사업장명	사업장관리번호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사유
				지원금액	회수금액	회수사유	
1	나눔*** 요양원	141-80-17***-0	감원방지기간 미준수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	7,200,000원	7,200,000원	감원방지의무 기간 미준수	폐문부재